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

2021. 10. 8.

양형위원회

I. 개요

- 의견조회 및 공개 대상인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 등을 소개함으로써,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기본적 이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수정 배경
 - 개별 범죄군별로 양형기준을 설정·수정해 온 결과 유사한 양형인자나 집행유예 참작사유가 체계적·통일적으로 규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전체 범죄군에 걸쳐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양형연구회 제1차 심포지엄에서 합의 관련 양형요소의 통일적인 규율을 위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한 바 있음. 또한, 제7기 양형위원회에서 전체 범죄군에 걸쳐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정비하기로 결정하였다가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추가하면서 양형위원회 업무 부담을 이유로 이를 디지털성범죄에 축소 한정하여 검토한 바 있음
 -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형량범위와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데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현재 양형기준이 설정된 모든 범죄군에 걸쳐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체계

적·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수정 절차

- 2021. 6. 7. 제110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전체 범죄군에 걸친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를 제8기 양형위원회 추진 업무로 의결
- 2021. 8. 17. 제111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 의결
- 2021. 10. 8. 제112차 양형위원 회의에서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구체적인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 의결
- 2021. 10 ~ 2021. 11.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를 위한 홈페이지 공개
- 2021. 12.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의견 검토 및 최종 수정 양형기준 의결

II. 현행 양형기준에서 합의 관련 양형요소 현황

1. 양형인자표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에서 합의 관련 양형요소 배치

범죄군 / 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나머지
살인		특별	특별		△일반		
성범죄	일반	특별			일반		
	치사	특별	△특별		일반		
강도	일반	특별	△		일반		
	치사	특별	특별		일반		
횡령·배임		특별	△	특별	△	△	
위증·증거	위증	일반	일반				

범죄군 / 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나머지
무고		일반	일반				
약취 등	일반	특별	△		일반		
	치사	특별	특별		일반		
사기		특별	일반	특별	△	△	
절도		특별	△	일반			[주요] 자의적 피해 회복
공무집행 방해	경상	△일반	△				
	중상	특별	△				
	특수치사상	특별	특별				
식품·보건	유해치사상 부정의료	일반	△		△		
지식재산권		특별	특별		일반		[일반]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폭력		특별	특별	△특별	△		
교통		특별	△특별		일반		[일반] 보험가입
선거	허위사실 공표	특별 (선거전)	특별 (선거전)				
		일반 (선거후)					
공갈		특별	일반	특별	△	△	
방화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일반]진화 기타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노력
	치사상	특별	△특별	△	△일반		
배임수증재	배임수재	특별					
성매매	강요 19↑	특별					
	강요 19↓	일반					
체포 등		특별	특별		△		
장물		특별		특별	△	△	
권리행사방해·강요		특별	특별		△		
업무방해	업무방해	특별	특별		△	△	
손괴	일반	특별	특별	특별	△		

범죄군 / 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나머지
근로기준법	치사상	특별	특별	△	△		
	강제근로	특별	특별	△	△		
	임금미지급			특별		△	
과실치사상 · 산업안전 보건	과실치사상	특별	특별		일반		[일반] 보험가입
	산업안전보 건	특별	특별				
도주	특수도주	△일반					
통화 유가증권	유가증권 위조·변조	특별	특별	특별		일반	
	부정수표			특별		일반	
채권추심법		특별	특별	△특별			
명예훼손·모욕		특별	특별				
유사수신행위법		특별		특별		일반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일반					[특별] 피해확산방지 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카메라 허위영상물	특별					
	강요·협박 통신매체	특별					
주거침입		특별	특별				

- 특별감경인자는 「특별」, 일반감경인자는 「일반」 기재
- 집행유예의 주요긍정사유는 연보라색, 일반긍정사유는 하늘색 바탕 표시
- 특별감경인자와 주요긍정사유, 일반감경인자와 일반긍정사유 조합이 아니면, △ 표시

2. 양형인자의 정의

가. 제1유형 - 처벌불원

유형	범죄군	정의 규정	핵심요소
특별감경 A	성범죄 (일반)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성 + 피해보상 + 처벌불원 (의미명확인식) 하자있는 합의 / 요보호피해자의 경우 합리성 없는 의사표시는 배제 요보호피해자의 경우 신중판단
	성매매범죄 중 성을 파는 행위 강요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특별감경 B	디지털성범죄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반성 + 처벌불원 하자있는 합의는 배제.
	강도범죄 (일반)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위 A유형에서는 요보호피해자의 경우 합리성 없는 의사표시도 배제하는 반면, 본 유형에서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만 배제하여, 배제범위가 좁음. 합의의 전제요건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음	
특별감경 C	배임수재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반성 + 처벌불원 하자 있는 합의는 배제
	절도범죄	無	
	공무집행 방해(중상)	無	

유형	범죄군	정의 규정	핵심요소
일 반 감 경	공무집행 방해 (경상)	無	
	식품·보 건범죄 中 부정의료 행위, 유해식품 · 의약품 · 화장품	<p>[환자측의 처벌불원] → 부정의료행위에 관한 양형인자임</p> <p>▶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상대방인 환자나 그 가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p> <p>▶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p> <p>[피해자측의 처벌불원(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유해식품·의약품·화장품</p> <p>※ 양형인자 명칭은 ‘처벌불원’이라고만 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이 없음</p>	<p>반성 + 처벌불원</p> <p>상당금액(≒합의) 공탁</p>

나. 제2유형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유형	범죄군	정의 규정	핵심요소
특 별 감 경 A- 1	살인범죄	<p>▶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 유족이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p> <p>▶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 유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p> <p>※ 근로기준법(착취), 지식재산권 유형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유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정의 규정상 합의주체로 ‘유족’이 포함되어 있음 / 방화범죄(치사상)은 그냥 뉘우치면 안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라고 규정함 / 업무방해범죄군 중 ‘경매·입찰방해범죄’유형은 합의인자가 없음 (국가적 법익과 관계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p>	<p>반성 + 처벌불원</p> <p>상당금액(≒합의) 공탁</p>
	약취등 (치사)		
	체포등		
	업무방해		
	근로기준 법 (착취)		
	강도범죄 (치사)		
	지식재산권		
	방화(치사 상)		
	손괴(치사 상)		
업무방해			
주거침입			

유형	범죄군	정의 규정	핵심요소
특별 감경 A-2	과실치사 상·산업 안전보건 범죄	▶ (A와 동일) ▶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됨으로써 /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상당금액 공탁 이 허용되는 전 제조건으로서, '계속적·최대 한 노력 + 합 의결렬'을 쟀.
특별 감경 A-3	교통범죄	▶ (A와 동일) ▶ 피해자 또는 유족과 계속적으로 피해 회복 및 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의가 결렬됨으로써 /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에 준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도 포함한다.	상당금액 공탁 의 판단 기준으 로,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 회복 에 준할 정도의 금액'을 제시함.
특별 감경 A-4	명예훼손	▶ (A와 동일) ▶ (A와 동일) ▶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발언의 취소,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정정, 공개사과 등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이 널리 알려져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도 포함한다.	'피해자의 명예 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까 지 포함하여, 그 범위가 매우 넓 음.
특별 감경 B	성범죄 (치사)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 유족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반성 + 피해보 상 + 처벌불원 (의미명확인식) 상당금액(≒합 의) 공탁
특별 감경 C	권리행사 방해범죄 공집방(특수치사 상)	無	
일반 감경	위증 무고범죄	정의 규정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무고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무고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피무고자' 용어 사용

다. 제3유형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유형	범죄군	정의 규정	핵심요소
특별감경 A	폭력범죄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성 + 처벌불원 상당금액(= 합의) 공탁
	손괴범죄 (일반)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은 다른 범죄군과 대동소이함	
특별감경 B	유가증권 위변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에 관한 규정이 없음	손해액의 2/3 회복 or 회복확 실시
특별감경 C	채권추심 범위반범 죄	無	

라. 제4유형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유형	범죄군	정의 규정	핵심요소
특별감경	근로기준법(미지급)	미지급액의 약 2/3 이상이 지급되거나 지급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미지급액의 2/3 지급 or 지급확 실시
특별감경	부정수표 발행등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각 경우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참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확인이 가능한 공소 제기되기 이전의 수표 금액과 회수된 수표 금액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 부분 회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상당부분 회수 처벌불원 확실한 회복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표소지인 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부정수표 발행·작성/수표부도) - 수표소지인 등을 위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확실한 지급 계획 등에 의하여 향후 확실한 피해 회복이 예상되는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일반 감경	절도범죄	無	

마. 제5유형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유형	범죄군	정의 규정	핵심요소
특별 감경 A	횡령배임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손해액의 2/3 회복 or 회복확 실시
	사기범죄	▶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	
	공갈범죄	실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밤화범죄 (일반)	※ ‘처벌불원’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음 / 횡령배임사기공갈범죄는, 금액에 따라 동종경합범 가중되어 양형기준 적용구간이 변경되는 특징이 있는 범죄군임 / 사기공갈범죄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일반감경인자로 들어가 있음(정의 규정 없음)	
특별 감경 B	유사수신 행위법위 반범죄	▶ 총 피해액(총 수신액에서 투자자에 대한 환급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약 2/3 이상의 금액에 관해 투자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되거나 투자자의 피해가 회복 또는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총 피해액의 2/3에 관하여, 피해가 회복되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족하다고 하여, 합의 요건을 완화하였음 (즉, 2/3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1/3이 처벌불원, 1/3 실제 회복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함)	총 피해액의 2/3 (총 수신액 - 환급액)에 관 한, 처벌불원 or 회복 or 회복확 실시
특별 감경 C	장물범죄	無	

III. 해외 사례

1. 영국 [양형기준 제도가 있는 국가]

- 2020년 양형법 (Sentencing Act 2020, 2020. 12. 1. 시행)

제3조(연기명령)

- (1) 이 법에서 「연기명령」은 명령에서 지정한 날까지 1개 이상 범죄의 범죄자에 대한 형 선고를 연기하여 법원이 범죄자를 다루면서 다음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 (a) 범죄자가 유죄로 인정된 뒤에 보일 행동(적절할 경우, 범죄자의 범죄에 대한 회복 조치를 포함한다) [the offender's conduct after conviction (including, where appropriate, the offender's making reparation for the offence)]

제57조(양형의 목적: 성년)

- (1) 이 조는
 - (a) 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다루고,
 - (b) 범죄자가 유죄로 인정될 때 18세 이상일 경우에 적용한다.
- (2) 법원은 다음 양형의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범죄자에 대한 처벌
 - (b) 범죄 전반의 감소(예방에 의한 감소를 포함한다)
 - (c) 범죄자의 개선과 교화
 - (d) 일반인 보호
 - (e) 범죄자가 범죄로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한 회복 조치
(the making of reparation by offenders to persons affected by their offences)

- 범죄자의 회복 조치는 ① 양형에 고려하여야 할 목적이고, ② 법원에서 유죄인정 후에 적절할 경우 형 선고를 연기할 수도 있는 주요 조건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는 직접적인 관계 없음. 범죄 종류도 불문

▣ 양형기준에서 정한 감경 인자

● 재산범죄

탈취 - 일반 (Theft - general) / 상품 탈취 (Theft from a shop or stall) / 강도 - 주거지 · 직업적으로 계획한 영업범 · 길거리에서 덜 정교한 영업범 (Robbery - dwelling · professionally planned commercial · street and less sophisticated commercial)

○ 진지한 반성, 특히 피해자에 대한 자발적 회복으로 증명된 경우

(Remorse, particularly where evidenced by voluntary reparation to the victim)

중대 침입 절도 (Aggravated burglary)

○ 범피자가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회복 조치를 한 것

(Offender has made voluntary reparation to the victim)

● 기업 / 단체

기업 우발살인 · 과실치사 (Corporate manslaughter)

○ 문제를 해소하려고 밝은 절차의 증거 (Evidence of steps taken to remedy problem)

단체: 식품 안전, 위생 규제 위반

(Organisations: Breach of food safety and food hygiene regulations)

○ 문제를 해소하려고 자발적으로 밝은 절차 (Steps taken voluntarily to remedy problem)

단체: 무허가, 유해 폐기물 보관, 취급, 처분 등 / 불법 공기, 토지, 수중 배출

(Organisations: Unauthorised or harmful deposit, treatment or disposal etc of waste / Illegal discharges to air, land and water)

○ 초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행한 보상

(Compensation paid voluntarily to remedy harm caused)

- 회복 조치에 대한 피고인의 「자발성」 요구 → 피해자 의사와는 무관

2. 미국 [양형기준 제도가 있는 국가]

▣ 연방 법전 제18편 (United States Code, Title 18)

제3553조(형의 부과)

(a) 형을 부과할 때 고려할 인자 - 법원은 이 항 (2)에서 정한 목적을 준수하여 필요한 만큼 충분한 형을 부과하여야 한다. 법원은 부과할 특정 형을 정할 때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범죄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을 제공할 필요

(the need to provide restitution to any victims of the offense)

제3572조(벌금형 부과에 관한 사항)

(a) 고려할 인자 - 법원은 벌금을 부과할지, 납부 시기와 방법을 정할 때 제3553조 (a)항에서 정한 사항과 더불어 다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원상회복명령 여부, 원상회복조치 여부 및 범위

(whether restitution is ordered or made and the amount of such restitution)

(b) 벌금이 배상능력을 해치지 말 것 -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받아 미국이 아닌 범죄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지면, 법원은 피고인이 배상할 능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벌금 등 금전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 원상회복 필요성은 양형에 고려하여야 하고, 원상회복조치 여부와 범위는 벌금 부과 여부와 납부 시기, 방법을 정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함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는 직접적인 관계 없음. 범죄 종류도 불문

■ 연방 양형기준

제3장 E 제1.1조(책임 인정)

(a) 피고인이 명백히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 범죄 수준을 2 수준 내린다.

적용상 주의사항

1. 피고인이 (a)항을 충족하는지 결정할 때 적절한 고려요소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C) 유죄 판단에 앞선 자발적인 원상회복이행

(voluntary payment of restitution prior to adjudication of guilt)

제5장 B 제1.3조(집행유예 조건)

(a) 필수 조건

(2) 중범죄에서 피고인은 (A) 원상회복조치, (B) 사회봉사, 또는 (C) 위 둘 모두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러한 조건이 명백히 불합리할 만한 이례적인 사정을 기록에서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법원은 연방 법전 제18편 제3563조 (b)에서 정한 재량 조건 1개 이상을 부과하여야 한다.

- 원상회복은 감경 인자로서 책임 인정에 고려할 사유이면서, 중범죄에서 집행유예에는 원칙적으로 부과하여야 할 조건

■ 각 주법

● 범행 발각 전 원상회복(또는 시도)을 감경 인자로 고려하는 주 (5개)

- Alaska Statutes § 12.55.155. (d)(8)

before the defendant knew that the criminal conduct had been discovered, the defendant fully compensated or made a good faith effort to fully compensate the victim of the defendant's criminal conduct for any damage or injury sustained;

- Arkansas Code § 16-90-804(c)(1)(D)

Before detection, the offender compensated or made a good faith effort to compensate the victim for any damage or injury sustained;

- Florida Statutes § 921.0026(2)(h)

Before the identity of the defendant was determined, the victim was substantially compensated.

- Tennessee Code § 40-35-113(5)

Before detection, the defendant compensated or made a good faith attempt to compensate the victim of criminal conduct for the damage or injury the victim sustained;

- The Revised Code of Washington § 9.94A.535(1)(b)

Before detection, the defendant compensated, or made a good faith effort to compensate, the victim of the criminal conduct for any damage or injury sustained.

● (주요한) 원상회복 자체를 감경 인자로 고려하는 주 (2개)

- California Rules of Court § 4.423(b)(5)

The defendant made restitution to the victim;

- North Carolina General Statute § 15A-1340.16(e)(5)

The defendant has made substantial or full restitution to the victim.

● 원상회복 및 향후 원상회복 의사까지 감경 인자로 고려하는 주 (6개)

- Idaho Code § 19-2521(2)(f)

The defendant has compensated or will compensate the victim of his criminal conduct for the damage or injury that was sustained; provided, however,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prevent the appropriate use of imprisonment and restitution in combination;

- Illinois Compiled Statutes § 5/5-5-3.1(a)(6)

The defendant has compensated or will compensate the victim of his criminal conduct for the damage or injury that he sustained.

- Indiana Code § 35-38-1-7.1(b)(9)

The person has made or will make restitution to the victim of the crime for the injury, damage, or loss sustained.

- Louisiana Code of Criminal Procedure § 894.1(B)(27)

The defendant has compensated or will compensate the victim of his criminal conduct for the damage or injury that he sustained.

- New Jersey Statutes § 2C:44-1(b)(6)

The defendant has compensated or will compensate the victim of his conduct for the damage or injury that he sustained, or will participate in a program of community service;

- North Dakota Century Code § 12.1-32-04(6)

The defendant has made or will make restitution or reparation to the victim of his conduct for the damage or injury which was sustained.

3. 독일 [양형기준 제도가 없는 국가]

■ 형법

제46a조(범죄자-피해자-화해, 손해회복)
범죄자가

1. 피해자와 화해에 이르려는 노력(범죄자-피해자-화해)으로 범행 피해 전부나 주요 부분을 회복하였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거나,
 2. 범죄자의 상당한 개인적 급부나 희생이 필요한 손해회복일 경우, 피해자에게 전부나 주요 부분을 배상하였으면,
- 법원은 제4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고, 자유형 1년이나 벌금형 360일보다 높은 형이 아니면, 형을 면제할 수 있다.

제56b조(준수사항)

(2) 법원은 유죄로 인정된 사람에게 다음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1. 범행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2. 범행과 범죄자의 인성에 비추어 적절할 경우, 공익시설에 대한 금전 지급
3. 그 밖의 공익급부이행
4. 국고에 대한 금전 지급

법원은 제1문 제2-4호의 이행이 손해회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만큼만 해당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 손해회복은 일반적으로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서
 - ① 손해를 모두 회복, 합의한 경우, ② 피해 상당 부분을 회복하거나, ③ 이에 못 미쳐도 진지한 노력이 인정되고, 상당한 개인적 급부, 희생으로 피해자에게 전부나 상당 부분을 배상한 경우도 널리 포함하는데, 자유형 1년, 벌금형 360일 이하면 면제까지 가능
- 보호관찰 조건 집행유예에서는 손해회복 노력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공익급부 등 다른 준수사항은 손해회복 노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함

■ 형사소송법

제153a조(부담과 지시사항하의 불소추)

(1) 공판절차의 개시를 관할하는 법원과 피의자의 동의하에 검찰은 경죄의 경우 공소제기를 잠정적으로 유예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부담과 지시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형사소추의 공익을 상쇄하기에 적합하고 그 책임의 중대성에 반하지 않는다면 피의자에게 부담과 지시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부담과 지시사항으로는 다음 각 호가 특히 고려된다.

1. 범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급부의 이행

5.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가해자-피해자-화해)과 그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전부 또는 대부분을 회복하거나 그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이미 기소되었으면, 법원은 검찰과 피고인의 동의하에 절차를 잠정적으로 중지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제1항 제1, 2문에 규정된 부담과 지시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제1항 제3-6, 8문을 준용한다. 제1문에 따른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제4문은 제1문에 따른 부담과 지시사항이 이행되었다는 확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제155a조(가해자-피해자-화해)

검찰과 법원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나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화해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화해에 적합한 경우 검찰과 법원은 화해를 유도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적합성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7c조(법원과 절차참가인 사이의 유죄합의)

(1) 법원은 적합한 사건에서 절차참가인과 제2-5항에 따라 절차의 계속 진행과 결과에 관하여 유죄합의를 할 수 있다. 제244조 제2항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른 유죄합의의 대상으로는 판결과 그 판결의 일부인 결정의 내용이 될 수 있는 법률효과, 기초가 되는 공판절차에서의 그 밖의 절차 관련 조치, 절차참가인의 소송태도만이 될 수 있다. 자백은 모든 유죄합의의 구성성분이 되어야 한다. 유죄선언 및 개선·보안처분은 유죄합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 손해회복을 위한 급부 이행 또는 피해자와 화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은 부담부 기소유예와 공판절차 중지, 유죄합의 조건이며, 실무에서도 유죄합의 내용 중 빈번히 등장한다는 회답이 60%를 상회할 만큼 활용함¹⁾

4. 일본 [양형기준 제도가 없는 국가]

▣ 형법²⁾

제25조(형 전부의 집행유예)

① 다음 사람이 징역, 금고 3년 이하나 벌금 50만 엔 이하를 선고받았으면, 정상에 따라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형 전부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1) 정성민, “독일 형사소송법상 협상 제도”, 외국가법연수논집(35), 법원도서관(2016), 407

2) 형법 중 양형 부분 상세는 백광균, 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0), 290 이하 참조

제66조(작량감경)

범죄 정상에 참작할 것이 있으면, 형을 경감할 수 있다.

- 단순히 범죄의 정상에 따라 작량감경, 집행유예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따로 정한 바 없음

■ **형사소송법**

제248조

범인의 성격, 나이 및 처지, 범죄의 경중 및 정상 및 범죄 후의 정황에 따라 소추가 필요하지 아니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범죄 후의 정황」을 기소유예에 고려할 요소로 규정

■ **실무3)**

● **피해 회복과 양형**

- 양형 이유 중에 피해 회복이 있으면 유리한 사정, 없으면 불리한 사정으로 들 경우가 많고, 제1심판결 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항소심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상으로 보아 양형을 감경할 경우 많음
- 상고심에서 드물게 양형부당 이유로 파기한 사건 중 상당수 또한 피해 회복을 근거로 삼음

● **피해 회복 정도**

- 전부 회복
 - 재산범죄 → 피해품 자체 반환, 피해액 전액 배상(소극손해, 위자료 포함)
 - 생명, 신체범죄 → 완전한 회복이란 불가능, 다만 계산식에 따라 정액 배상
- 일부 회복

3) 상세는 백광균, 벌금형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0), 258 이하 참조

- ❑ 회복 정도에 따라서 양형에 고려
- ❑ 피해 회복 자체를 중시할지, 피해 잔액을 중시할지는 경우에 따라 차이

● 피해 회복 노력

最高裁判所 第二小法廷 判決 昭和 42年(1967) 12月 1日 集刑 第165号 第311頁

간접적 피해자라고 할 A는 이른바 마을의 고리대금업자로 피고인의 분할변제 요청을 거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제공하였는데도, 이를 거부하였기에 합의가 성립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도 기록상 엿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본 피고인의 경력,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죄책, 횡수, 태양, 피해액, 취득액의 소비 상황, 합의 교섭 경과 등 일체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사안인데도, 제1심판결은 피고인을 징역 5년의 실형에 처하였고, 이를 원심이 유지한 것은 형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여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피해 회복 동기, 목적 → 기본적으로 불문

- 피해자가 지나친 액수를 요구하는 바람에 민사소송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피고인 주장과 가까운 액수로 귀결되었다면, 자발적 손해배상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음
-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피해액 상당 지급한 경우에도 객관적 피해 회복 관점에서 어느 정도 고려

● 피고인의 자력

- 똑같은 배상액 1천만 엔(1억 원 상당)이라도 10억 엔(100억 원 상당) 자산가가 지출한 것과 평생 모은 재산을 소진한 경우는 의미가 다름

IV.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과 범죄군 분류

1. 양형기준의 합의 관련 양형요소 규정 방식

가. 요약

구분	보호법익	특별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일반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1-1	개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2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1	개인 및 국가·사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2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국가·사회	-	-

-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는 합의에 준하는 피해 회복의 인정 여부 등 각 범죄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1-1항 또는 1-2항과 같이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규정
- 개인 및 국가·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보호 정도 등 각 범죄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2-1항 또는 2-2항과 같이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규정

나. 상세 설명

1) 개인 법익에 대한 범죄

- 현황

특별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일반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상당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 살인, 강도, 횡령·배임 등 개인 법익에 대한 범죄에서 설정해둔 합의 관련 양형인자 등은 대체로 위와 같이 분포
- 이러한 분포는 순수한 개인 법익에 대한 범죄의 불법성은 해당 개인, 즉 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②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상당 부분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 해외에서도 피고인이 범행 후에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사정,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사정은 법률과 양형기준에 따라 중요한 양형인자 등으로 취급함

▣ 특별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자칫 실질적인 회복 조치 없이 노력만으로도 유리한 양형인자 등이 될 수도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는 주로 재산범죄에서 피해액의 2/3 이상 회복을 기준으로 삼아 「처벌불원」에 준하여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로 삼은 것
- 위 둘은 모두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서 「처벌불원」에 준하는 위상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공통하기에 하나의 인자로 묶을 수 있음
- 「실질적 피해 회복」의 수단은 ① 경제적인 방법으로서 피해액의 직접 변제는 물론 공탁, 치료비 등 비용 대납이 있을 수 있고, ② 비경제적인 방법으로는 명예훼손 등에서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등이 있을 수 있어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할 수 있음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처벌불원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죄군(1-1 범죄군)에서는, 그 일관성을 관철하면서도 법관의 합리적인 양형 재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용어로 통일함
- 처벌불원에 준하는 피해 회복을 인정하기 어려운 범죄군(1-2 범죄군)에서는 특별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로 「처벌불원」만을 두기로 함

■ 일반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 「상당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수준에는 못 미쳤으나, 피고인이 범행 후 자발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하였음을 반영하는 양형인자 등이라는 점에서 공통됨
- 위 둘은 사회통념상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만한 「상당한 피해 회복」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공통하기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용어로 통일함이 바람직함

■ 정비 원칙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처벌불원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죄군(1-1 범죄군)

특별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일반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 처벌불원에 준하는 피해 회복을 인정하기 어려운 범죄군(1-2 범죄

군)

특별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일반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 「자의적 피해 회복」,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그 밖에 종전 합의 관련 양형인자는 모두 삭제

2) 개인 법익 및 국가·사회 법익에 대한 범죄

■ 현황

- 공무집행방해, 선거, 방화 등 개인 법익과 국가·사회 법익을 함께 보호하는 범죄에서는 처벌불원 등 합의 관련 양형인자 등의 위상이 개별성, 특수성에 따라 제각각으로 설정
- 「처벌불원」을 예로 들면,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일반감경인자(경상), 특별감경인자(중상, 특수치사상), 선거 범죄는 일반감경인자(선거 후 처벌불원), 특별감경인자(선거 전 처벌불원)를 각각 혼용

■ 검토

- 순수한 개인 법익에 대한 범죄, 순수한 국가·사회 법익에 대한 범죄와 달리 중간적 성격을 띠는 상당수 범죄에서는 일률적으로 처벌불원 등 양형인자 등의 위상을 결정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① 개인 법익도 상당 정도 보호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죄군(2-1 범죄군)에서는 앞서 본 개인 법익에 대한 범죄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② 나머지 범죄(2-2 범죄군)에서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만을 일반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 일반

긍정사유로 규정함

▣ 정비 원칙

- 개인 법익도 상당 정도 보호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죄군(2-1 범죄군)

특별감경인자 검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일반감경인자 검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나머지 범죄(2-2 범죄군)

특별감경인자 검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일반감경인자 검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그 밖에 종전 합의 관련 양형인자는 모두 삭제함

다. 국가·사회 법익에 대한 범죄

▣ 현황

- 뇌물, 공문서, 사문서 등 국가·사회 법익에 대한 범죄에서는 합의 관련 양형인자 등을 따로 설정해두지 아니함

▣ 정비 원칙

- 순수한 국가·사회 법익에 대한 범죄에서는 피해자로서 「개인」을 상정할 수 없고, 설령 피해자로서 국가를 상정한다고 치더라도, 처벌권 행사 주체인 국가가 피고인을 용서할 수는 없으며, 순수한 개인 법익에 대한 범죄와 달리 특정한 「피해」도 구체적으로 상정

하기 어렵기에 그 「회복」 또한 특정, 평가하기 어려움

- 현행처럼 합의 관련 양형인자 등을 따로 두지 아니하는 원칙을 관철함

2.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현행 44개 범죄군 양형기준 분류 결정

가. 분류 요약

구분	범죄군
1-1	살인 / 강도 / 횡령·배임 / 약취·유인·인신매매 / 사기 / 절도 / 지식재산권 / 폭력 / 교통 / 공갈 / 체포·감금·유기·학대 / 장물/ 권리행사방해 / 업무방해 (1유형) / 손괴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1유형) / 명예훼손 / 주거침입 / 배임수증재
1-2	성범죄 / 성매매 (1-가 유형) / 디지털 성범죄 (2, 3, 4, 5유형)
2-1	선거 (3유형) / 방화 / 업무방해 (2유형) / 근로기준법 위반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2유형)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 위반 (2, 3유형) /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2유형)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2-2	식품·보건 (2, 3유형) / 성매매 (2-나 유형) / 도주·범인은닉 (1-2유형) / 디지털 성범죄 (1유형) / 위증 / 무고 / 공무집행방해
3	뇌물 / 공문서 / 사문서 / 식품·보건 (1유형) / 마약 / 증권·금융 / 선거 (1, 2, 4유형) / 조세 / 변호사법 위반 / 성매매 (나머지 유형) / 사행성·게임물 / 석유사업법 위반 / 도주·범인은닉 (나머지 유형)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

나. 주요 범죄별 검토

■ 성범죄 → 제1-2범죄군

- 피해자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 법익으로 보호하는 범죄로서 무엇보다도 피해자 자신의 진정한 용서가 피해 회복의 핵심임
- 종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문제된 「도가니」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고, 여전히 범국민적으로 엄벌 요청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보아 규범적으로 실질적 피해 회복 개념을 상정하기도 어려움
- 종전 양형기준 또한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 겸 집행유예 주요 긍정사유로 설정한 이상, 피해자 자신의 용서가 없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만으로 「처벌불원」에 준하여 평가하기 어려움

■ 위증·증거인멸 → 제2-2범죄군

- 증인, 증거의 진실성, 완결성을 보장함으로써 사법, 징계 절차의 신뢰성, 공정성을 우선 보호하되, 피고인과 피해자(형사), 원고와 피고(민사) 등 관련 당사자 개인의 권익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범죄임
- 종전 증거인멸·증인은닉(2유형)은 합의 관련 양형인자 등이 없었으나, 물적 증거에 대한 범죄로서, 인적 증거에 대한 위증과 구조가 동일하고, 피고인, 피징계자,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추가 필요함

■ 무고 → 제2-2범죄군

- 허위 고소, 고발, 신고로부터 피해자의 자유, 재산 등 개인 법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형사, 징계 절차의 신뢰성, 공정성이라는 국가·사회 법익 또한 함께 보호하는 범죄
- 위증·증거인멸죄는 이미 개시된 사법절차에서 증거를 조작하는 범행인 반면,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절차가 개시되도록 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절차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증·증거인멸죄와 동등하게 규정함이 타당

■ 공무집행방해 → 제2-2범죄군

- 만약 2-1 범죄군으로 분류하게 되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특별감경인자로 들어가게 되는바, 이 경우 국가의 공권력에 대한 방해 행위가 단순한 금전 공탁만으로 특별감경인자가 적용되는 결과가 발생함
- 현재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공무원들(특히 경찰관들)은 상부 지시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합의를 해 주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특별감경인자로 들어가게 되면, 공무원들은 공무집행 중에 폭행을 당하고도 정액 공탁금만 받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임

■ 식품·보건 → 제2-2범죄군 (2, 3유형) / 제3범죄군 (1유형)

- 식품, 의약품 등의 진정성, 효용성 또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보장함으로써 식품·보건 질서라는 국가·사회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
- 허위표시(1유형)는 특정 개인의 법익까지 구체적으로 보호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2유형)과 부정의료행위(3유형)는 구매자, 환자 등 개인의 법익 또한 부수적으로 보호한다고 볼 수 있어 실제 상해,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를 존중

할 필요성 큼

■ 선거 → 제2-1범죄군 (3유형) / 제3범죄군 (1, 2, 4유형)

-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국가·사회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3유형)은 상대방 후보자가 실제 피해를 보는 이상, 해당 개인의 법익도 함께 보호하는 범죄로 볼 수 있고, 선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정정보도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선거의 공정성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어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 주요공정사유로 평가할 수 있고, 종전 양형기준 또한 마찬가지

■ 방화 → 제2-1범죄군

- 피해자의 재산, 신체, 생명 등 개인 법익과 더불어 공공의 안전이라는 국가·사회 법익도 함께 보호하는 범죄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은 특별감경인자 중에서 1번째로 빈번함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은 화재 확산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한 독자적인 일반감경인자로 존속이 필요함

■ 배임수증재 → 제1-1범죄군

- 피해자의 재산이라는 개인 법익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범죄로서 특정 국가·사회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로는 보기 어려움
- 수재자가 증재자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실제 부정한 업무처리까지 나아간 경우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른 재산범죄와 마찬가지로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도 유의미할 수 있고, 이를 「처벌불원」에 준하여 특별감경인자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 수재자 또는 증재자가 진정한 사과 또는 일정한 보상 조치로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라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수재자와 증재자의 경우를 달리 취급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음
 - ▣ 성매매 → 제1-2범죄군 (1-가 유형) / 제2-2범죄군 (2-나 유형) / 제3 범죄군 (나머지 유형)
 - 19세 이상에 대한 성매매 강요(1-가 유형)는 성매매의 적법 여부와는 관계없이 성적 자유라는 개인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의 용서 없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만으로 「처벌불원」에 준하여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로 평가하기 어려움
 - 19세 미만에 대한 성매매 강요(2-나 유형)는 미성년자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국가·사회 법익을 주로 보호하되, 부수적으로는 피해자 성적 자유라는 개인 법익도 함께 보호하는 범죄
 - 나머지 유형은 건전한 성 문화라는 국가·사회 법익만을 보호하는 범죄
 - ▣ 업무방해 → 제1-1범죄군 (1유형) / 제2-1범죄군 (2유형)
 - 업무방해(1유형)는 재산, 신체 등 개인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
 - 경매·입찰방해(2유형)는 그 대상 재산, 참여자의 신체 등 개인 법익과 경매, 입찰의 공정성이라는 국가·사회 법익을 함께 보호하는 범죄이고, 실제 경매지연에 따른 목적물의 감가상각, 재입찰에 따른 경매비용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업무방해와 마찬가지로 합의 관련 인자 추가 필요함
 - ▣ 근로기준법위반 → 제2-1범죄군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1유형)은 피해자의 자유, 임금 등 미지급(2
-

유형)은 피해자의 재산이라는 각 개인 법익과 더불어 건전한 근로 질서라는 국가·사회 법익을 함께 보호하는 범죄

- 종전 임금 등 미지급(2유형)은 「처벌불원」이 양형인자에서 빠졌었으나,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이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만 유효한 공소기각판결 사유가 되어(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232조 제3항, 제1항),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이루어진 「처벌불원」 또한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가 필요함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 제1-1범죄군 (1유형), 제2-1범죄군 (2유형)

- 과실치사상(1유형)은 피해자의 신체, 생명이라는 개인 법익을 형법으로 보호하는 범죄이고, 특히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 산업안전보건(2유형)은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이라는 개인 법익과 건전한 산업안전보건 질서라는 국가·사회 법익을 함께 보호함

▣ 도주·범인은닉 → 제2-2범죄군 (1-2유형) / 제3범죄군 (나머지 유형)

- 형사 절차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국가·사회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
- 특수도주(1-2유형)는 실제 폭행, 협박을 당하는 공무원이 존재하므로, 그 신체, 자유라는 개인 법익도 보호하는 범죄로 볼 수 있는데, 폭행, 협박을 통한 「도주」가 행위 태양이므로, 폭행, 협박 자체가 행위 태양인 공무집행방해만큼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중시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제2-1범죄군 (2, 3유형) / 제3범죄군 (1유형)

- 통화 위조·변조 등(1유형)은 국가가 독점하는 통화유통 질서라는 국가·사회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

-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2유형), 부정수표 발행 등(3유형)은 배서인, 소지자 등 관련 피해자의 재산이라는 개인 법익과 더불어 건전한 유통 질서라는 국가·사회 법익도 함께 보호하는 범죄로 볼 수 있음
- 종전 부정수표발행 등(3유형)은 「처벌불원」이 양형인자에서 빠졌었으나, ①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3-1유형)는 반의사불범죄로서(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처벌불원」이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만 유효한 공소기각판결 사유가 되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232조 제3항, 제1항),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이루어진 처벌불원 또한 양형에 고려할 필요가 있고, ② 허위신고(3-2유형)는 반의사불범죄가 아니므로(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심급 불문하고 처벌불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 → 제2-1범죄군(2유형) / 제3범죄군(1유형)
 - 대부업법 위반(1유형)은 거래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최고 이자율, 등록의무 등 건전한 금융 질서라는 국가·사회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
 - 채권추심법 위반(2유형)은 채무 때문에 폭행, 협박 등을 당하는 피해자의 자유, 재산이라는 개인 법익과 더불어 건전한 채권추심 질서를 보호하는 범죄
-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제2-1범죄군
 - 유사수신행위로부터 피해자의 재산이라는 개인 법익을 보호함과 더불어 건전한 금융 질서라는 국가·사회 법익도 함께 보호하는 범죄
- 디지털 성범죄 → 제1-2범죄군(2, 3, 4, 5유형), 제2-2범죄군(1유형)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유형)은 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

므로, 건전한 성장 환경이라는 국가·사회 법익을 우선 보호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 인격이라는 개인 법익 또한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범죄

- 나머지(2, 3, 4, 5유형)는 모두 피해자 본인의 의사에 어긋나야만 성립하는 성범죄로서 피해자의 용서 없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만으로 「처벌불원」에 준하여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로 평가하기 어려움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디지털 원본의 무한 복제, 확산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한 독자적인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로서 존속 필요함

V. 추가 정비 사항: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 현황 → 일부 범죄에서만 일반가중인자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는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약취·유인·인신매매에서 각각 일반가중인자로만 설정
- ▣ 정비 원칙 → 피해자 있는 범죄 전반(제1, 2범죄군)에 걸쳐 일반가중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 & 표준 정의 마련
 -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성격을 불문하고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범죄군에서 일괄 일반가중인자이자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성범죄뿐 아니라 재산범죄 등 피해자가 존재하는 일반 범죄에서도 피고인의 무리한 합의 시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것이 별개의 범죄로 기소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드문 것이 현실이므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

- 합의 시도 과정에서 강요죄뿐 아니라, 폭행, 협박 등 다른 범죄가 발생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여지도 있으니, 그 명칭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로 변경 필요함
- 종전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기초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나친 제약이 되지 아니하는 합리적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표준 정의 마련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 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VI. 정의 규정 정비

1. 처벌불원

▣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 정의 구성 요소

- ① 진지한 반성(가해자 태도 요소)
- ②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표시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또는 검증(피해자 의사 요소)
- ③ 보상의 상당성에 대한 확인(보상의 상당성 요소)

▣ ① 가해자 태도 요소 → 유지

- 회복적 사법의 취지에 비추어 가해자, 즉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처벌불원을 유리한 양형인자 등으로 삼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

- 해외에서도 피해 회복에 대한 피고인의 자발성,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은 법률과 양형기준상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

▣ ② 피해자 의사 요소 → 유지

- 2011년 영화 「도가니」의 개봉으로 성범죄 양형기준이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당시 양형위원회에서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개정함, 범죄군을 불문하고 그 취지를 관철할 필요가 있음

▣ ③ 보상의 상당성 요소 → 삭제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감경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자칫 피고인의 경제력이 양형을 좌우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비재산범죄의 경우 경제적 보상을 처벌불원의 요건으로 둘 만한 논리적 정합성이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 자체가 「회복적 사법」의 핵심

▣ 정의 규정 (① + ②)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2.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정의 신설

- 종전 양형인자 중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를 통합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함
- 핵심요소로서 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② 합의에 준할 정도의 피해 회복 또는 그 확실시를 정하되, 종전 재산범죄에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의 기준으로 삼은 손해액의 약 2/3 이상은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임
- 정의 규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의 반성·뉘우침이나 합의 노력 없는 공탁 등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함

▣ 정의 규정(선거범죄, 명예훼손범죄 제외 나머지 범죄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선거범죄,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범죄의 특수성 감안하여 정

의 규정 추가

- 선거범죄 중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정의 규정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발언을 취소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도를 정정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시정조치가 선거일 직전에 이루어져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 명예훼손범죄 중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정의 규정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발언을 취소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다음 이유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에는 못 미치되, ② 양형에서 유의미하게 고려할 만한 수준의 피해 회복을 핵심요소로 하는데, 이와 같은 기준을 다양한 범죄에 걸쳐 일관되게 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설령 정의를 두더라도, 추상적인 기준의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기에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짐
- 해당 인자의 판단 기준은 결국 사회통념상 피해 회복의 「상당성」이므로, 불완전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양형 재량권 행사를 통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VII. 수정 양형기준 의결 시기

▣ 아동학대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

- 제8기 양형위원회 임기동안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한 아동학대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각 양형기준은, 해당 범죄군 양형기준 수정 시 위 논의 사항(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을 반영하여 한꺼번에 수정함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폭력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폭력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 역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시 위 논의 사항(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을 반영하여 한꺼번에 수정함

▣ 현행 44개 범죄군 양형기준 중 성범죄, 교통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폭력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양형기준을 대상으로, 수정 사항이 있는 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함